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. 10. 2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15. 7. 9 선고 2014나20156 판결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. 10. 22 선고 2014가단2730 판결

전문

원고A

피고B

변론종결 2014. 10. 8.

판결 선고 2014. 10. 22.

주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구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원고의 맘머느리인 피고의 이름으로 2013. 3. 25. 의성농업협동조합 C 계좌를 개설하고 10,000,000원을 입금하였고, 2013. 7. 1. 의성농업협동조합 D 계좌를 개설하고 5,300,000원을 입금하였으며, 2013. 7. 1. E 계좌를 개설하고 4,700,000원을 입금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4. 1. 6. 위 세 계좌(이하 '이 사건 각 계좌'라 한다)에 관한 예금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예금 합계 20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예금'이라 한다)을 수령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이 법원의 의성농업협동조합 남부지점장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이 사건 각 계좌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계좌이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20,000,000원은 원고의 돈인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의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간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,000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,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, 피고의 남편인 F이 원고에게 70,000,000원을 증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F에게 원고의 토지인 경북 의성군 G 전 1,709m²를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토지를 증여하지도 않고 있으며, 피고와 F은 원고를 오랫동안 봉양해왔으므로 이 사건 예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3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예금은 원고가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어서, 원고와 피고 사이의

관계에서는 원고의 돈이라 할 것이므로,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출금한 이상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이를 거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예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.

나아가 피고가 원고를 부양해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법률적으로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, 원고가 피고의 남편 F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. 5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정덕기